

15.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244호 2000. 1. 28

개 정 이 유

건축사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였으나,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자격제로 일원화함(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
 - 나. 건축사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법 제22조 삭제).
 - 다. 건축사사무소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사무소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등록갱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법 제23조제1항 및 제 7항)
 - 라. 건축사협회의 설립 및 회원가입을 자율화하여 경쟁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법 제31조 내지 제33조)
- ※ 시행일 :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2000. 4. 29)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축사자격의 취득)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면허)”를 “(자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자격증 및 자격수첩”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를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4호중 “건축사면허”를 “건축사자격”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면허증등의 부당행사금지)”를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금지)”로 하고, 동조중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면허의 취소등)”을 “(자격

의 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그 면허를”을 “그 자격을”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면허를 받은”을 “자격을 취득한”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면허가”를 “자격이”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자격증 및 자격수첩”으로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무를 영위한 때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의 제목중 “등록의 취소등에”를 “자격의 취소 등에”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등록)”을 “(건축사업무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건축사사무소

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을 “건축사업무신고를 한”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를 “건축사업무신고 절차”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8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건설교통부령이”를 “건설교통부령이”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를 당해 건설업자에 소득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의 제목 (“등록거부의 사유”) (“신고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등록하는 자”를 “개설한 자”로 한다.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7조의 제목중 “등록사항”을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성명·건축사사무소 소재지”를 “성명·건축사사무소”로, “등록사항”을 “건축사업무신고사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명령”)을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을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등록사항변경등을”을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등”으로 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1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 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제28조제2항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한 경우 당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가”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당해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가”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 2.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1호중 “건축사면허”를 “건축사자격”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제29조의 제목 (“등록의 말소”)를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사사무소등록부”를 건축사업무신고부로, “등록”을 “신고사항”으로 하며,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때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중 “설립하여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된다.”를 “건축사업무소신고를 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을 “건축사업무소신고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이 취소 또는 소멸된 자 또는 건축사업무소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 등 건축사업무소신고가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건축사협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임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호중 “면허를 받거나”를 “자격을 취득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면허증”을 “자격증”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를 “건축사업무소신고를 한 자”로 하고, 동조제5호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을 “건축사업무소신고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건축사협회 회장의 임의가입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으로 본다.

③(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④(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소신고의 효력상실처분으로 본다.

⑥(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회보